

2021학년도 방과후학교 운영(안)

■ 제안 사유

「2121 전북방과후학교 운영계획 및 길라잡이(전북교육2021-002)」

담당 : 조효진

1. 목적

- 가. 교육과정 교과목 중 부족한 영역을 보충, 심화학습을 한다.
- 나. 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상위등급을 취득하는 데 도움을 준다.
- 다. 기초 실력을 배양하여 자율적,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.
- 라. 사교육 ~~욕구~~를 학교 내로 흡수하여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절감한다.

2. 방침

- 가.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- 나. 학생의 학습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으로 편성하여 운영한다.
- 다.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을 지원할 수 있다.
- 라. 부분적으로 학생선택형 방과후학교를 운영한다.

3. 세부계획안

가. 운영

- 1) 대학진학을 위한 교과 관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운영하며 운영기간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2월로 정한다.
- 2) 학생선택형 방과후학교의 경우 사전선호도조사를 거친 결과 선호도가 높은 강좌를 우선으로 한다.
- 3) 수익자 부담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 전 결정 징수한다. 사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보고한다.
- 4) 편성 및 운영은 담당교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.
- 5) 강사는 본교의 교사(계약직교사 포함)을 기본으로 구성을 하되, 강좌에 따라 외부강사를 활용한다. 외부강사 채용 시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다.
- 6) 수강료는 강사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강사료는 시간(50분 기준)당 30,000원으로 산정 한다.
- 7)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을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8) 부득이한 결강 시, 동일한 자격의 교사(강사)가 연간계획에 의해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 동일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체인력비를 시간당 10,000원으로 지급한다.

나. 학생관리 및 안전지도

- 1) (출석관리) 학부모에게 지각,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.
- 2) (생활지도) 프로그램 참여 시 교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 한다.
 -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.
 - 학생 건강을 위한 청결한 환경 유지, 청소 시 입장 지도한다.
- 3) (안전지도) 강의실은 교실 및 특별실을 사용하며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을 철저히 실시한다.
 - 방과후학교 참여학생 보호 및 관리를 위해 안전 취약 분야 사전 점검 강화
 - 특별 집중점검 및 상시 점검 실시
 -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
 -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
 - 교육 활동 안전 확보
 - 안전사고 예방
 -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
 - 다양한 인력 활용 교내외 수시 순찰 강화
 - 학교 개방 시간 동안 학교 건물 뒤편, 주차장, 교사 내 화장실, 특별교실 등 학교 안팎 순찰 집중 강화
 - 학교 인근 경찰서, 지구대 및 파출소, 소방관서 등의 협조로 순찰 강화
 - 학교 개방 시간 동안 학교 주변 순찰 강화 협조 요청
 - 방과후학교 참여 학생 관리 및 하교 지도
 - 학생 출석 상황을 파악하고 수강생 지각, 결석 시 학부모에게 통보
 - 방과후학교 수업 후 교실에 남아 있는 학생 확인 후 하교 지도
 -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생들에게 교통규칙 준수 및 안전 지도 권장
 - 교실, 복도 및 계단, 화장실에서 지켜야 할 안전 질서 생활화
 - 학교 외부인 출입 단속 강화
 - 외부인 방문증 패용 의무화
 - 기타 안전사고 대비 철저
 - 급식 제공 시 식중독 예방 철저
 - 전염병 발생이나 발생이 우려될 경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기
 - 태풍, 지진, 감염병 등 불가피한 자연재해 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,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, 학부모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.
 - 직사광선이 강한 시간대, 폭염 특보, 미세먼지 · 오존 경보 발령, 태풍 · 집중호우, 흑한, 폭설 등 기타 교육감(학교장)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.
 -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시 방과후학교를 중지, 연기하거나, 다양한 방법(실시간 쌍방향,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등)으로 운영할 수 있다.
 - 학생의 특이 체질이나 질병 유무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
 - 학교 자체 안전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학생 비상연락망을 수시 수정하여 비치활용

다. 홍보

- 1) (홍보방법)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.
 - 학교 홈페이지 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.
 - 학교 소식지,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.
- 2)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.

라. 회계 관리

- 1) 회계 관리의 적정
 - 방과후학교의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.
 - 교육(지원)청 으로부터 저소득층 학생이나 방과 후 학교 내실화를 위해 재정 지원을 받음.
- 2) 수강료
 - 수강료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, 강사료로 사용한다.
 -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교육 기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,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강료 정보 공개
 - 수강료 징수 방법은 스쿨 뱅킹으로 수납하며, 수강료 납부는 분기(2~4개월 단위)로 나누어 수강료 징수
 - 수강료는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,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하는 것이 원칙임
 - 수강료 환불규정은 단위학교 학교 여건에 맞게 기준마련 (**수강료환불기준참조**)
- 3) 강사료
 - 강사료는 프로그램 운영 시수, 수강 학생 수, 프로그램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를 거쳐 적정 수준으로 책정한다.
 - 강사료는 내부강사 및 현직교사는 1시간(50분 기준)에 30,000원으로 한다.
 - 내부강사의 강사료는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정산하고, 타교 현직 교원 또는 타 기관·단체에 근무하는 자가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시적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 징수함
 - 외부 강사는 사업 소득세를 적용하여 원천 징수한다.
 - 담임교사가 방과후학교에서 본연의 업무(입학 상담이나 진로 지도 등)와 관련된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경우에는 강사료를 받을 수 없음
 - 강사료는 강사와 협의 하여 분기별, 반기별도 가능)
- 4) 수용비
 - 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 수강료에 부담하던 수용비는 학생들에게 부과하지 않는다.
(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용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도시형 방과후학교 예산에서 활용)
 - 수용비는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전화·전기료, 냉·난방비, 복사기 및 정수기 사용료, 인쇄비, 기타 소모품 구입, 시설사용료, 교구 수리 등의 학교 시설 사용료와 학생 관리를 위한 발표회 개최, SMS 문자 사용료,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,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를 거쳐 집행해야 함
 - 학교 예산상에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따로 잡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성·운영해야 함.

(교육청 방과후학교 수용비(운영비) 집행기준)

구 분	집 행 기 준	비 고
수익자부담 방과후학교	수익자 부담으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는 강사료의 8%이내로 방과후학교 보조인력 인건비, 소모품 구입, 방과후학교 교실 전기요금 등으로 사용 가능하나, 일률적으로 8% 공제는 지양하고 필요한 수용비만 공제(감사원은 3%정도를 권장함)	자산취득비 (시설비 및 비품구입비) 로 집행 불가
자유수강권	강사료, 도서구입비, 재료구입비, 수용비로 집행	

5) 정산

- 수익자 부담 경비의 집행 잔액은 수강생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. 다만, 집행 잔액이 소액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(자문)를 거쳐 학생복지 사업비, 불우이웃돕기 등으로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학교장은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, 수강료 환불 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함
- 학교의 행사나 공휴일, 휴업일, 방학과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엔 수강료를 반환·보강하지 않으나, 강사의 사정으로 수업을 못할 경우 보강 또는 환불해야 함

6) 방과후학교 지원금 집행

구 분	수용비	운영비	비 고
도시지역 방과후학교 지원금	수용비 운영계획에 의거 지원금을 <u>수용 비로 전액 사용 가능</u>	방과후학교 보조인력인건 비, 프로그램 강사료, 교재 구입비, 재료구입비, 입장 료,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 가능	- 수익자에게 수용비를 부과하지 않음 - 수용비 또는 운영비는 자산취득비(시설비 및 비품구입비)로 집행 불 가
자유수강권	<u>수용비로 사용할 수 없음</u>	프로그램 강사료, 교재구 입비, 재료구입비, 입장료, 체험활동비 등으로 사용 가능	- 수용비 잔액은 운영비 로 집행 가능

마. 자유수강권 운영 (도교육청 방과후 운영지침 참고)

1) 목적 및 필요성

-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,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교육기회 제공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 제고 및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
- 방과후학교의 잠재적 수요자에게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학생·학부모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기반 마련

2) 지원 내용

- 저소득층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(교과, 특기적성)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

- 프로그램 수강료(강사료, 도서구입비, 재료구입비, 수용비)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을 거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내의 현장학습, 체험활동비(입장료, 대여료, 교통비)도 1인당 예산 내에서 지원 가능
- 학교운영위원회 심의(자문)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및 체험 활동 등 일회성 행사는 제외

3) 지원 대상 및 순위

- (1순위) 우선지원대상자 : 기초생활수급자 자녀,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, 법정 차상위 대상자(차상위복지급여 대상자, 차상위자활급여 대상자,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, 차상위 장애수당 및 장애연금 대상자),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
- (2순위) 소득에 따른 지원 : 중위소득 64% 범위에 속하는 자
- (3순위) 학교장 추천 :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(5월)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-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: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, 2순위의 10%이내
 - ※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
- (4순위) 다자녀, 다문화 추천 :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을 기준(5월)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
 - 다자녀 추천 :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, 2순위의 10% 이내
 - ※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함
 - 다문화 추천 :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 1순위, 2순위의 10% 이내

4)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

- 행복e음에서 학교(NEIS)로 조사 결과 통보
- 교육감이 정하는 선정 기준에 맞게 학교장 내부결재를 득한 후 대상자 선정
- 도교육청에 수혜대상자 보고
- 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재배정 후 학교로 예산 지원
- 지원 우선순위: 1순위(우선지원대상자), 2순위(소득에 따른 지원), 3순위(학교장 추천), 4순위 (다자녀, 다문화 추천) 순서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

5) 자유수강원 지원 방침

- 본교, 타교, 공공민간기관(단체)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모든 프로그램 이용가능
- 타교, 공공민간기관(단체)의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, 수강여부를 확인(출석부, 수강증 등) 후 타교 혹은 공공민간기관에 강사료 지급(기관과 협의하여 기관 또는 강사 개인에게 지급 가능)(단, 학원 등에서 수강한 강좌는 제외)
 - ※ 예산 소진을 위해 연말에 1회성 및 단발성 프로그램 무리하게 운영 금지
- 수혜 대상자 수를 기준으로 6월에 1차 지원(1, 2분기 포함) 후, 분기별 지원 예정
- 자유수강권의 바른 취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교원, 학부모, 학생에게 홍보
- 자존감 보호를 위하여 신분노출 방지 및 일반학생과 구분한 프로그램 개설 금지

6) 운영상 유의사항

- 자유수강권 대상자는 2021학년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 선정과 무관하게 1/4분기 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, 신학기 시작과 동시에 개설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등을 안내하고, 기 배부된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 할 수 있도록 함.
- 전년도 학교장 추천자도 금년도 1/4분기 까지 지원이 가능하며, 21년도에 학교장 추천 을 다시 선정하여 포함 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고, 새로 선정된 학생은 3월부터 소급하여 지원
- ('21년도 신규 입학생) 1순위, 2순위, 3순위, 4순위의 자유수강권 지원기준 등을 명확히 안내 하여 3월부터 수강토록 유도
- ※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수익자부담경비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, 추후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수익자부담경비 환불 등 구체적 안내 필요

바. 수강료 환불 규정

- 1) 수강료 환불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을 한다.

①환불 사유 발생 → ②담임 및 담당교사 확인 → ③기안 및 결재 → ④행정실 확인 후 환불

- 2) 방과후학교 시작 후 일주일 기간 중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에만 환불사유가 발생하며, 방과후수업 시작 일주일 경과 후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및 총수강시간과 관계없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명 없이 결석을 많이 한 경우, 환불해주지 않는다.
- 3)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

구 분	환불사유 발생일	환 불 금 액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	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날	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일할 계산한 금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	방과후학교 시작 후 일주일 이내	이미 납부한 수강료전액 ※ 이미 구입한 도서 및 재료구입비는 제외
	방과후학교 시작 후 일주일 경과	환불하지 아니함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다고 말하지 않은 경우	총 수업시간과 관계없음.	환불하지 아니함.

※ 학적변경(전학, 자퇴, 재적 등), 장기결석사유(질병, 출석인정결석 등) 등의 인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.